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2월 8일

나. 발 의 자: 남완현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2.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남완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그 가족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3조 ~ 제4조)
-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안 제5조 ~ 제6조)
- 지도·감독 및 상호 보완의 관계(안 제7조 ~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조례안은

-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그 가족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 이고 8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도, 제나목 “그 밖에 고령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여 제가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령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가족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하였고,
-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가족의 정의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에서도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실제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및 제25조 등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관련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와 상호 보완의 관계 및 시행 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지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오랜 기간 돌보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지쳐 비극적 선택을 하게되는 ‘간병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짐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 간병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2021.9.23.)되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장기요양대상자 가족을 위한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실제 전국적으로 장기요양대상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아직 없으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급여 등급 판정자 또한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장기요양급여 등급 판정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우리 구에서도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관련 조례는 없지만 2023년부터 치매 및 노인성질환 대상 어르신 돌봄가족을 대상으로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은 본 조례안의 지원범위에 포함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한다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한편, 본 조례안에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노인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등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법 제3조제3항에서는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실제 통계에서도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판정자 또한 자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호 대상자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족들의 돌봄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사료됨.
- 이에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등을 근거하여 장기요양대상자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가족들이 간병으로 인해 지치지 않고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

(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4
----------	-----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남완현, 이성수, 이예찬
전승관, 이순우, 최인순
의원(6인)

1. 제안이유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들이 가족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고 우울감 및 스트레스 등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3조 ~ 제4조)
- 다.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안 제5조 ~ 제6조)
- 라. 상호 보완의 관계(안 제7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4. 2. 13. ~ 2. 18.)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나. 그 밖에 고령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현황, 욕구 등 실태조사
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사례 관리
4.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호 보완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와 중복 또는 충돌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